

6·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 (부승찬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손자녀·증손자녀 및 형제자매와 그 자녀까지 확대하여, 아직 전달되지 못한 무공훈장을 찾아드림으로써 공로자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하고자 함 (안 제2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